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은숙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703
----------	------

발의연월일 : 2025. 8.

발의의원 : 양은숙 의원,

김보경 의원, 신달호 의원

1. 제안이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공공요금의 급격한 인상 등으로 경영 부담이 급증한 소상공인에 대해 공공요금을 지원하는 규정이 신설(2025. 7. 22. 시행)된 사항을 반영하고, 카드 수수료를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카드 수수료 지원 및 공공요금 지원 근거 신설(안 제6조제1항)

나. 지원 중단 및 환수 규정 정비(안 제6조제2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나.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붙임)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대구광역시”를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대구광역시”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제2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이란”을 “이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지역신용보증재단 또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이하 “신용보증기관”이라 한다)가 군과 협약을 체결하여”로, “대출”을 “대출·급부(給付) 등”으로, “군과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을 “보증하는”으로 한다.

3.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나.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라.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마.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지역금고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군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창업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
2. 소상공인 생산 제품의 홍보 및 마케팅
3. 소상공인의 소규모시설 개선지원
4. 소상공인에 필요한 정보 제공
5. 법 제15조의2에 따른 디지털 인프라 구축 및 카드 수수료 지원
6. 법 제12조의8에 따른 공공요금 지원
7.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8. 그 밖에 군수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창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 시, 참여한 소상공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교부한 지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거나 환수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이 아닌 자로서 거짓 자료를 제출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참여한 경우
2. 제1항에 따른 사업으로 지원받은 소상공인이 사업을 계속 영위하지 않거나 사업장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참여하는 소상공인이 스스로 지원 증지를 요청한 경우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사업을 하는 소상공인 관련 전문성을 가진 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 지원 방법·절차·방법 등과 관련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업 추진사무 중 일부를 소상공인 관련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고, 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제1항 중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경영안정자금에 대한”을 “제6조제1항제7호에 따라 소상공인이 경영안정을 목적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특례보증지원”을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 지원”으로, “있으며 보증재원”을 “있으며, 그 보증재원”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특례보증대상)”을 “(특례보증 지원대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상자”를 “지원대상자”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최근”을 각각 “신청일 기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대출금”을 “융자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례보증대상”을

“특례보증 지원대상” 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 제17조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운용 지침 등을 근거로 운영하는 소상공인정책자금(대리대출) 지원사업의 제외 업종인 경우

제9조제2항 중 “이차보전은” 을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금(이하 “이차보전금” 이라 한다)의 지급 범위는” 으로, “연 3퍼센트 이자율” 을 “그 이자율이 연 100분의 3 범위” 로, “이차보전금은 대출금융기관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를 “그 지급 방법은 금융기관의 청구에 따른다”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중 “따라 이차보전을 할 경우 이차보전” 을 “따른 이차보전금의 지급” 으로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보증기관” 을 “제7조에 따라 신용보증기관” 으로, “자가” 를 “자(이하 이 조에서 “대상자” 라 한다)가” 로, “이차보전금 지원을 중지 및 환수 할” 을 “제9조에 따른 이차보전금 지원을 중지 또는 환수할” 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거짓” 을 “대상자가 거짓” 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융자금” 을 “대상자가 융자금”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사업수행” 을 “대상자가 사업수행” 으로, “아니한” 을 “않는” 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지원받은 사업자가” 를 “대상자가 휴업 또는 폐업 등” 으로, “아니한” 을 “않는” 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등에 의하여” 를 “등의 사유로 대상자의” 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본문 중 “이차보전을 지원받은 자” 를 “대상자” 로 한다.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대구광역시</u> 달성군에 소재하는 <u>소상공인</u>의 경영 안정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u>소상공인</u>의 창업 및 경영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u>소상공인기본법</u>」에 따라 <u>대구광역시</u> ----- ----- -----.</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u>소상공인</u>”이란 「<u>소상공인기본법</u>」(이하 “<u>법</u>”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p> <p>2. (생략)</p> <p>3. “<u>금융기관</u>”이란 「<u>은행법</u>」 제2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u>농업협동조합법</u>」 및 「<u>수산업협동조합법</u>」에 따른 각종 협동조합, 「<u>상호저축은행법</u>」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u>새마을금고법</u>」에 따른 지역금고를 말한다.</p>	<p>제2조(정의) ----- -----.</p> <p>1. -----<u>제2조</u>----- -----.</p> <p>2. (현행과 같음)</p> <p>3. “<u>금융기관</u>”이란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p> <p style="padding-left: 20px;">가. 「<u>은행법</u>」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p> <p style="padding-left: 20px;">나. 「<u>농업협동조합법</u>」에 따른 농협은행</p> <p style="padding-left: 20px;">다. 「<u>수산업협동조합법</u>」에 따른 수협은행</p> <p style="padding-left: 20px;">라. 「<u>상호저축은행법</u>」에 따른 상호저축은행</p> <p style="padding-left: 20px;">마. 「<u>새마을금고법</u>」에 따른 지역금고</p>

4.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군과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5. 6. (생략)

제6조(경영안정 및 창업지원) 군수는 소상공인의 경영 및 창업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사업
2.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홍보 및 마케팅을 위한 사업
3. 소상공인의 소규모시설 개선지원에 관한 사업
4. 소상공인에 필요한 정보 제공사업
5. 소상공인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4. -----이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지역신용보증재단 또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이하 “신용보증기관”이라 한다)가 군과 협약을 체결하여 --- 대출·급부(給付) 등--- 보증하는 -----.

5. 6. (현행과 같음)

제6조(경영안정 및 창업지원) ① 군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창업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
2.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홍보 및 마케팅
3. 소상공인의 소규모시설 개선지원
4. 소상공인에 필요한 정보 제공
5. 법 제15조의2에 따른 디지털 인프라 구축 및 카드 수수료 지원
6. 법 제12조의8에 따른 공공요금 지원
7.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8. 그 밖에 군수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창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 설>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 시, 참여한 소상공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교부한 지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거나 환수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이 아닌 자로서 거짓 자료를 제출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참여한 경우

2. 제1항에 따른 사업으로 지원받은 소상공인이 사업을 계속 영위하지 않거나 사업장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참여하는 소상공인이 스스로 지원 중지를 요청한 경우

<신 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사업을 하는 소상공인 관련 전문성을 가진 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 지원 방법·절차·방법 등과 관련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신 설>

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

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업 추진사무 중 일부를 소상공인 관련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고, 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특례보증 지원) ① 군수는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경영안정 자금에 대한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군수는 특례보증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증재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④·⑤ (생략)

제8조(특례보증대상) ① 제7조에 따른 특례보증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소상공인을 말한다.

1. 최근 3개월 이내에 신용관리정보 대상자로 등록된 사실이 없을 것
2. 최근 3개월 이내에 연체 대출금 보유 사실이 없을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례

제7조(특례보증 지원) ① ----- 제6조제1항 제7호에 따라 소상공인이 경영안정을 목적으로 -----
-.

② (현행과 같음)

③ ----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 지원----- 있으며, 그 보증 재원-----.

④·⑤ (현행과 같음)

제8조(특례보증 지원대상) ① -----
-- 지원대상자-----.

1. 신청일 기준 -----
2. 신청일 기준 ----- 융자금 -----

② -----
----- 특례보증 지원대상-

보증대상에서 제외한다.

1. 삭 제

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마련하여 운영하는 지침 등에 따른 소상공인정책자금(대리대출) 지원 제외 업종인 경우

3. (생 략)

제9조(이차보전) ① (생 략)

② 이차보전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과 약정한 대출이자율 중 연 3퍼센트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로 하며, 이차보전금은 대출금융기관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신 설>

③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할 경우 이차보전 절차, 방법 등 세부사항은 금융기관과의 협약으로 정한다.

제10조(지원중지 및 환수) 신용보증기관

의 특례보증에 의하여 대출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금 지원을 중지 및 환수 할 수 있다.

1. 거짓 자료를 제출하여 특례보증 및

-----.

2. 법 제17조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운용 지침 등을 근거로 운영하는 소상공인정책자금(대리대출) 지원사업의 제외 업종인 경우

3. (현행과 같음)

제9조(이차보전)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금(이하 “이차보전금”이라 한다)의 지급 범위는 ----- 그 이자율이 연 100분의 3 범위----- 그 지급 방법은 금융기관의 청구에 따른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 따른 이차보전금의 지급 -----

-----.

제10조(지원중지 및 환수) 제7조에 따라 신용보증기관

----- 자(이하 이 조에서 “대상자”라 한다)가 ----- 제9조에 따른 이차보전금 지원을 중지 또는 환수할 -----.

1. 대상자가 거짓 -----

이차보전을 받은 것이 판명되었을 경우

2. 용자금을 목적 외 사용하였을 경우

3.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지원받은 사업자가 사업을 계속 영위하지 아니한 경우

5. 연체 등에 의하여 이차보전금이 증가한 경우

6. 이차보전을 지원받은 자가 사업장을 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을 경우. 다만, 사업장이 군에 소재하는 동안 지원한 금액은 환수하지 않는다.

제11조(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제6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그 사무 중 일부를 군 출자·출연 기관이나 사업추진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

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 대상자가 용자금-----

3. 대상자가 사업수행----- 않
는 -----

4. 대상자가 휴업 또는 폐업 등 -----
않는 -----

5. --- 등의 사유로 대상자의 -----

6. 대상자-----

<삭 제>

<삭 제>

□ 「소상공인기본법(법률)」(2020.12.8. 일부개정, 2021.3.9. 시행)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 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소상공인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 보호·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간의 협력과 소상공인시책의 연계를 통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사업장 환경의 개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고객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소상공인 사업장의 환경 개선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4조(사회안전망 확충 및 삶의 질 증진) ① 정부는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의 생산성 제고 및 삶의 질 증진을 위하여 소상공인의 복지 수준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2025.1.21. 일부개정, 2025.7.22 시행)

제12조의8(소상공인에 대한 공공요금의 지원) ① 정부는 공공요금의 급격한 인상 등에 따라 경영부담이 급증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2(소상공인 디지털화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 디지털 격차 해소 및 디지털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1. 소상공인 생업현장 디지털 혁신모델 확산

2. 소상공인 디지털 생태계 조성
3. 디지털 전환 지원 인프라 구축
4. 그 밖에 소상공인 디지털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지역신용보증재단법(법률)」(2025.1.21. 일부개정, 2025.4.22. 시행)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을 말한다.
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4.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 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 다.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자 외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 계획에 해당되는 중소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및 개인(이하 “소기업등”이라 한다)에게 자금을 융통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신용보증”이란 소기업등이 부담하는 다음 각 목의 채무에 대하여 제9조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과 제35조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가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소기업등이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자금의 대출·급부(給付) 등을 받음으로써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
 - 나. 소기업등의 채무를 금융회사등이 보증하는 경우 그 보증채무를 이행한 금융회사등으로부터의 구상(求償)에 응하여야 할 금전채무
 - 다. 그 밖에 소기업등의 채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전채무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법률)」(2024.3.26. 일부개정, 2024.9.27. 시행)

제4조(공공요금 및 수수료의 결정) ① 주무부장관은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승인·인가 또는 허가하는 사업이나 물품의 가격 또는 요금(이하 “공공요금”이라 한다)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5.7.8 일부개정 2025.7.22 시행)

제4조의15(소상공인에 대한 공공요금의 지원) ① 법 제12조의8에 따른 소상공인에 대한 공공요금의 지원(이하 “공공요금지원”이라 한다) 대상 공공요금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요금으로 한다.

② 정부는 공공요금의 인상 정도 및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공공요금지원의 금액(이하 “공공요금지원금액”이라 한다)을 정한다.

③ 정부는 영업의 종류, 활동 여부 및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공공요금지원을 받는 소상공인을 선정한다.

④ 공공요금지원의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소상공인의 공공요금 납부 전 또는 납부 후 소상공인에게 공공요금지원금액을 지급

2. 공공요금 부과 기관이 공공요금지원금액만큼 차감하여 공공요금을 부과하고, 공공요금 부과 기관에 공공요금지원금액만큼 지급

3.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공요금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 따른 디지털 인프라 구축 및 카드 수수료 및 같은 법 제12조의8에 따른 공공요금 등에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안 제6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2. 미첨부 근거 규정

-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의안 주관부서인 경제산업과에서는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사업을 2026년 본예산에 신규사업으로 편성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다만, 2026년도 본예산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 중에 본 의안이 제출됨에 따라 구체적인 예산액, 대상·지급 규모 등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과 그 방향이 확정되지 않아 기술적 추계가 어려움. (안 제6조제1항제5호)
- 법률 조문상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에 대한 주체는 정부로 되어 있으며, 시행령에서 지원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선정 기준에 대한 사항을 중소벤처기업부령(시행규칙)으로 위임하였음. 다만, 시행규칙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 그 지원 대상과 범위가 불분명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구체적인 기준 등을 수립하여 지원하는 것에는 기술적인 추계가 어려움. (안 제6조제1항제6호)

작 성 자

소 속 및 직 위

달 성 군 의 회 의 원

성 명 (연 락 처)

양 은 숙 (☎ 2048)